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IP분쟁에서의 대체적	덕 분쟁해결제도(ADR) 혹	: 대방안에 관한 연구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 사법지원실	(특별지원심의관) 성	명 정현미
연 구 자	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(책임연구원 : 윤선희 교수)		
연구기간	2019. 11. 7.~ 2020. 4. 6.		
연 구 금 액	49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		
계 약 방 법	□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☑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□ 기타 수의계약		
연구결과	 ○ 우리나라에서 IP ADR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중재 제도와 조정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 ○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ADR 현황을 민간형 IP ADR, 행정형 IP ADR, 사법형 IP ADR로 구분하여 비교 ○ 우리나라 IP ADR 기관의 현황과 한계,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개선의 틀을 제안 ○ 행정형 IP ADR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의 한계를 검토하여 한계 극복을 위한 사법형 IP ADR 도입의 적절성 및 단계별 도입 방향을 제시 		
평가항목	상	중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0		
내용의 완결성	0		
구성, 체제의 적정성	0		
참고문헌의 충실도	0		
학술적, 실무적 가치	0		
제출기간 준수	0		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0		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0		
평과 결과 총평	별지와 같음		
공개 여부	☑ 공개 □ 비공개		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		
	□1호 □2호 □3호	□4호 □5호 □6호 □	7호 □8호
2020. 6. 15.			
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			

평가 결과 총평

○ 아래와 같이 본 정책연구용역은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 및 이용현황을 검토하여 각국 제도의 장·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IP 중재·조정센터 준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IP ADR의 현황 및 한계, 개선 방향을 찾아서 궁극적으로 IP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(ADR) 확대방안을 제시함으로써, 향후 아시아 IP 중재·조정센터를 개원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, 각국 제도의 장·단점을 고려한 독자적인 제도를 고안해낼 수 있는 토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(1) IP ADR의 의의 및 한계

- 주요 내용
- IP ADR의 필요성
- IP ADR의 순기능
- O IP ADR의 한계
- IP ADR의 현황

■ 수행 내용

- 지적재산권 분쟁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ADR의 필요성 및 순기능이 무엇인지 확인
-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IP ADR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중재 제도와 조정 제도로 구분하여 각각 살펴봄

(2)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 및 이용현황

- 주요 내용
-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
- 해외 주요 ADR 기구 및 이용 현황
- 수행 내용
- 미국, EU, 영국, 독일, 중국, 일본을 중심으로 각국의 ADR 현황 및

지적재산권 사건에 대한 ADR 활용 상황을 확인함

○ WIPO 중재조정센터, ICC 국제중재법원, 홍콩 국제중재센터(HKIAC), 싱가포르 국제중재선터(SIAC), 런던 국제중재법원(LCIA), 미국중재협회 /국제분쟁해결센터(AAA/ICDR), 그 외 중국과 일본에서 운영 중인 ADR 센터들의 운영 현황들을 살펴봄

(3) 국내 IP ADR의 현황 및 한계

■ 주요 내용

- 국내 IP ADR의 현황
- 국내 IP ADR의 한계
- 지식재산지적재산분쟁 조정 제도 개선에 관한 제논의들
- 지적재산권분쟁 중재 제도에 관한 개선 논의들

■ 수행 내용

- IP ADR 기관의 운영 현황을 행정형, 민간형, 사법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봄
- 유형별 IP ADR 현황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, 그러한 개선 논의들의 한계점을 찾아봄

(4) IP ADR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

■ 주요 내용

- 행정형 IP ADR 활성화 방안과 한계
- 사법형 IP ADR의 확대 및 활용을 통한 IP ADR 활성화 방안

■ 수행 내용

- 기존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행정형 IP ADR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개략적으로 살펴봄
- 행정형 IP ADR에 대한 개선 방향의 한계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법형 IP ADR 도입의 적절성을 검토함

○ 사법형 IP ADR의 도입 방안을 3단계에 걸쳐 검토함(특허법원 조정센터 → 특허법원 중재·조정센터 → 아시아 IP 중재·조정센터)